

# 충주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09. .  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2011년 시행된 「말산업 육성법」에 “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(변경신고) 사항이 규정되고,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정하여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별표 1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(변경신고) 수수료 신설
  -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: 30,000원 / 1건당
  - 농어촌 승마시설 변경신고 : 10,000원 / 1건당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(1) 입법예고 (2012.8.10.~8.30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##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명 “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”를 “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수리”를 “수리(受理)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요율 및 징수구분)”을 “(요율과 징수 구분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공부나”를 “공부(公簿)나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인증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”를 “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)”을 “(이미 낸 수수료의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납부한”을 “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공부”를 “공부(公簿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자에 한한다”를 “사람으로 한정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의 구분란 라목에 14), 15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준	수수료	비 고
2. 인가, 허가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			
라. 농수산관계			
14)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	1건	30,000원	
15)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	1건	10,000원	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제증명”을 “각종 증명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주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과 제5조의3제2항 중 “제증명”을 각각 “각종 증명”이라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	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주시에 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, 인허가, 그 밖의 신고·신청의 <u>수리</u> 와 등록, 지정, 확인 등(이하 “각종 증명 등”이라 한다)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수리(受理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 <u>요율 및 징수구분</u> ) (생 략)	제3조( <u>요율과 징수 구분</u> )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준) ① (생 략) 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  ③ (생 략)	제4조(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<u>공부(公簿)나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징수방법) ① (생 략)  ② <u>인증계기와 무인민원증명</u>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.	제5조(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<u>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</u> 발급기로 ----- ----- -----.
제6조( <u>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</u> ) 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 였을 때에는 이미 <u>납부한</u> 수수료 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인	제6조( <u>이미 낸 수수료의 반환</u> ) -- ----- ----- <u>낸</u> ----- -----.



## **관계법령**

### **□ 말산업 육성법**

**제15조(승마시설의 신고 등)**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**□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**

**제6조(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)**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(이하 “승마시설”이라 한다)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(변경신고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**□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**

**제7조(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)**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(이하 “승마시설”이라 한다) 신고서(변경신고서)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